

부산고등법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5나2867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2555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2013. 6. 12. 자로 합명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원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및 제4항 "결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채대원 사경화